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학력조회 의뢰(2024학년도 1학기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신입학생)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교학과)	담당자	성 명 공**
			소 속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교학과
			전화번호 02-940-XXXX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2024.02.22.(목)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엑셀 파일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전자문서 회신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신입생 학력 조회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출신대학, 출신학과, 성명, 졸업일자, 주민등록번호, 학위등록번호에 대한 진위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1.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하고,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인정보와 관련 있는 사항을 위탁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개인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사실을 대학에 통지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정한 거래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나 영업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이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복사, 재생산, 제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위탁종료 시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복사 등에 의한 자료 포함)를 대학의 요구에 따라 반납하거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증빙을 대학에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학력조회 의뢰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서울) 행정실)	담당자	성 명 정**
			소 속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
			전화번호 02-961-XXXX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2024.02.28.(수)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엑셀 파일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전자문서 회신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신입생 학력 조회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졸업일, 출신대학/성명/생년월일/전공/학사등록번호에 대한 진위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1.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하고,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인정보와 관련 있는 사항을 위탁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개인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사실을 대학에 통지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정한 거래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나 영업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이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복사, 재생산, 제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위탁종료 시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복사 등에 의한 자료 포함)를 대학의 요구에 따라 반납하거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증빙을 대학에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